

2024년도 제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4. 2. 5. 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박재화(분과위원장), 송수현, 오영주, 최태경, 홍승기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4-4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34건(안건번호 제2024-1062호~1095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4-1062호~1074호(순번 1번~13번)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거래중인 사안으로,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모두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1075호~1080호(순번 14번~19번)는 블로그에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원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1081호(순번 20번)는 웹하드에 출판물의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하고 있는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4-108호(순번 21번)는 영상저작물의 자막파일을 제공중인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임이 명백한 점, 번역물로서 2차적저작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으나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직접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

각한 점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그 외 안전번호 제2024-1083호~1095호(순번 22번~34번)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하는 심의안전 게시물 13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박재화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8회 저작권보호심의 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4-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 주시기 바람. 제1호 안전 회의록과 관련하여 민원 관련 부분,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저작물명, 게시물 제목 등이 노출된 부분의 비식별 처리된 부분 관련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비식별 처리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제1호 안전 부분을 비식별 처리 후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

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박현주 변호사: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제2024-8회 시정권고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주 변호사: 이번 심의안건은 일반인이 신고하거나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된 불법복제물에 대하여 보호원이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을 권고하기 위하여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7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49건의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해당 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에 관한 심의임. 관련 법령과 규정 및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현주 변호사: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13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와 '♣♣♣♣'를 통해 판매하

고 있는 사안 총 27건임.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직접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지는 않으나, 게시물을 통해 연락을 취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1 채팅 등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을 판매하고자 함.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의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고 그로부터 영리를 얻고자 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사정 및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이 각 원저작물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모두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을 함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번~13번, 출판물의 스캔본을 판매중인 중고거래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A 위원: 해당 안전에 대해 사전 검토하고 확인한 결과, 순번 5번과 11번의 경우 기출문제를 문제집으로 제작 후 짧은 해설을 덧붙인 것으로서 원저작물인 도서 자체에 저작권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됨.
- B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도서를 복제하여 판매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할 경우 저작권법상 문제가 되는 도서를 보호하게

되는 것인지?

- A 위원: 기출문제를 내는 주최측은 이용허락을 해주지 않지만,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이 부분이 명확히 확인된 것은 아니고, 사안의 원저작물을 고려하더라도 복제물을 복제한 것에 대한 시정권고는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박현주 변호사: 원저작물의 해설 부분에 한해서는 2차적저작물로 보호될 가능성이 있음.
- A 위원: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은 하지만 회의록에 이러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남겨주면 좋겠음.
- B 위원: 가결하자는 의견이신지?
- 박재화 분과위원장: 더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 C 위원, D 위원: 가결 의견임.
- B 위원, E 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그렇다면, 만장일치로 순번 1번~13번에 대하여 경고 및 삭제·전송중단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또한, 오늘 논의된 내용은 회의

록에 기록하여 주기 바람.

- 박현주 변호사: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순번 14번~19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 블로그에서 '♫♫♫♫♫ ♫♫♫' 등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 총 7건임.

순번 14번~19번은 모두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상당한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14번~19번, 블로그에서 영상물의 불법복제물을 전송 중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4번~19번에 대해 시정권고로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박현주 변호사: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순번 20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웹하드에 게시된 만화 불법복제물 1

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전송하고 있는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모두 시정권고하는 것이 타당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20번, 만화 불법복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참석 위원 전원: 가결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0번에 대해 가결함.

- 박현주 변호사: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1번은 민원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일본 애니메이션의 자막을 공유하는 게시물이 ☆☆☆ 블로그에 게시된 사안이며, 총 11건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게시자는 ☆☆☆ 블로그에 일본 애니메이션 '■ ■ ■ ■ ■ ■'의 자막 파일을 제작·전송하고 있음. 게시물의 내용으로 보아 게시자가 직접 번역한 것으로 보이고, 원저작물은 일본과 국내에서 2024. 1. 5.부터 방영중임.

순번 21번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막파일을 제공중인 점, 비록 자막파일은 번역물로서 2차적 저작물의 가능성이 있으나 최신 영상저작물의 불법복제물 이용을 촉진하여 합법시장을 곧바로 대체하는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

입.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순번 21번 최신 영상물의 자막 파일을 제공중인 게시물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함.
- B 위원: 지난번에 심의하였던 안전과 동일한 것인지?
- 박현주 변호사: 저작물은 다르나, 동일 게시자가 동일한 블로그에 동일한 방식으로 게시한 자막 파일임.
- B 위원: 민원인이 저작물의 권리자거나 관계자인지?
- 박현주 변호사: 여러 정황상 아닌 것으로 판단됨.
- C 위원: 권리자가 제재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시정 권고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있음.
- A 위원: 동의함. 해당 블로그의 전체적인 성격을 보면 상업적 목적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자막 파일만 게시한 정황을 보면 취미 목적으로 보이고, 해당 블로그에 굿즈 판매 게시물이 게시되어 있기는 하나 게시자가 판매하는 것도 아닌 점을 보면 온전히 저작물을 좋아해서 자막 등을 작성 중인 것으로 판단됨. 이에 대하여 시정 권고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가 하는 의문이 있음.

- D 위원: 최신 영상 즉 방영중이거나 혹은 국내 방영 예정인 저작물의 자막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가결해왔음.
- C 위원: 그렇더라도 정작 권리자가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시정권고 취지와 안 맞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음.
- B 위원: 자막만으로 영상물을 대체하는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음.
- A 위원: 공식 자막을 복제하여 배포한 것은 불법복제물로 이견이 없을 것이나, 직접 제작한 자막이라 달리 판단하여야 할 부분이 있음. 해당 회차 원저작물이 국내 시장에 공개되었는지?
- 박현주 변호사: 그러함. 현재 일본과 국내에서 방영중이며, 방영일이 며칠 차이 안 나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친고죄이고, 권리자가 문제를 삼지 않는다는 것은 시장에 영향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D 위원: 원칙에 따라 지난번과 같이 가결하자는 입장임.
- A 위원: 동일한 게시자에 대한 동일 민원인이 신고한 안건으로 반복 침해가 인정되어 가결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떠한지?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A 위원: 다만, 추후에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 반복 침해자가 아닌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를 고려해야할 것으로 생각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더 의견 없으시면 가결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1번을 원안대로 가결함.
- 박현주 변호사: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2번 ~3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총 13건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영화 '위시'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2번은 영화 '위시'로, 2024. 1. 3. 극장 개봉하여 현재 상영중인 최신 영화의 전체 분량을 제공중인 사안임.
(영화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의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8번은 영화 '아쿠아맨과 로스트 킹덤'임. 2023. 12. 20. 극장 개봉하여 현재 일부 극장에서 상영중인 최신 영화 전체 2시간 분량을 웹하드에서 판매중인 사안임.
해당 2건을 포함하여 순번 22번부터 34번까지 총 13개의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으로 복제한 영상물 등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박재화 분과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각자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를 확인함)해당 안전은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박재화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2번~34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1062호~1095호(순번 1번~34번)에 대해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o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13쪽부터 15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4-977호~1107호(순번 1번~131번)의 구글 검색 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o 박재화 분과위원장이 제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4년 제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 2. 19.

분과위원장 박재화

위원 오영주

위원 송수현

위원 홍승기

위원 최태경